



##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사항을 자치법규에 동일 내용으로 중복하여 명기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공무원의 특별 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경남도 타 지자체 의회 현황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회 개정안의 장기재직 일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5년~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도 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확대함으로써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성군의회 공무원 전체의 사기가 진작되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경남 시·군의회(18개소)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 현황

구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총계	50일	50일	50일	60일	65일	50일	60일	60일	40일	45일	45일	50일	50일	50일	50일	50일	-
5년 ~	-	-	-	5일	5일	-	5일	-	-	-	-	-	-	-	-	-	-
10년 ~	10일	10일	10일	15일	20일	10일	15일	20일	10일	15일	15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
20년 ~	20일	20일	20일	20일	20일	20일	20일	20일	15일	20일	20일	20일	20일	20일	20일	20일	-
30년 ~	20일	20일	20일	20일	20일	20일	20일	20일	15일	25일	20일	20일	20일	20일	20일	20일	-

- 다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월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 7. 토 론 : 없음.

## 8. 심사결과 : 2023. 11. 28. 원안가결